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I. 네트워크 법집행법 일반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독일 내 2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된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불만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당시 연방 법무부장관인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SNS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안(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을 발의했다. 동법은 통신미디어 서비스제공자가 이들이 제공하는 인터넷플랫폼에서 위협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사용자를 빠르게 돕도록 이들을 압박했다.

II. 주요 SNS제공자의 투명성 보고(Transparantbericht)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¹⁾, 매 6개월마다 동법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는 동법의 중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법률에 따르면, SNS제공자

¹⁾ 이 법은 2017년 10월 1일 발효됐으나,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유예기간(3개월)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년 1월 1일부터다.

기간	소셜 네트워크	투명성 보고서(URL)
2018. 1. - 2018. 6.	페이스북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8/07/facebook_netzdg_juli_2018_deutsch-1.pdf
	구글+	https://storage.googleapis.com/transparencyreport/legal/netzdg/G%2B_NetzDG-TR-Bundesanzeiger-2018-06.pdf
	트위터	https://cdn.cms-twdigitalassets.com/content/dam/transparency-twitter/data/download-netzdg-report/netzdg-jan-jun-2018.pdf
	유튜브	https://storage.googleapis.com/transparencyreport/legal/netzdg/YT-NetzDG-TR-Bundesanzeiger-2018-06.pdf
2018. 7. - 2018. 12.	페이스북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9/01/facebook_netzdg_januar_2019_deutsch52.pdf
	구글+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netzdg/googleplus?hl=de
	트위터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9/01/facebook_netzdg_januar_2019_deutsch52.pdf
	유튜브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netzdg/youtube?hl=de

는 불법 콘텐츠로 추정되는 불만건수, 이 중 몇 건이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를 매6개월마다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및 구글+는 반년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한 보고, 이른바 투명성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두 번의 보고가 있었다.

1. 2018년 상반기

1) 페이스북

(1) 신고자별 신고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사용자	773
기관	113
총계	886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64	13
위헌조직 표시 사용	66	21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 음모	24	2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 지시	26	1
간첩목적의 위조	27	1
공연한 범죄선동	123	26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83	16
범죄 또는 테러단체 조직	30	0
국민선동	247	74
폭력물 반포	86	18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95	21
신앙 및 종교단체, 세계관에 대한 모욕	92	24
아동음란 저작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	19	0
모욕	460	114
비방	407	90
명예훼손	342	66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95	16
협박	119	31
증거위조	56	3

2) 구글+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사용자	2,741	1,257
기관	28	20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1,121	554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564	196
외설적 내용	249	121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135	49
폭력	138	77
개인정보	153	35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409	245

(3)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삭제 건수 비교

신고이유	네트워크 법집행법	커뮤니티 가이드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174	71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14	35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107	89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178	376
폭력	3	74
개인정보	7	28
외설적 내용	1	120

3) 트위터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사용자	244,064	27,112
기관	20,754	1,533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사용자		기관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6,602	964	814	55
위헌조직 표시 사용	6,106	2,472	399	50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음모	1,095	129	162	14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지시	815	133	118	14
간첩목적의 위조	1,034	19	136	2
공연한 범죄선동	11,569	2,259	610	104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은 교란	3,878	500	376	39
범죄단체 조직	334	18	48	2
테러단체 조직	1,712	200	323	24
해외에서의 범죄 및 테러단체	3,353	551	490	45
국민선동	77,499	9,828	4,596	363
폭력물 반포	3,299	469	420	44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4,201	590	193	29

신고이유	사용자		기관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신앙 및 종교단체, 세계관에 대한 모욕	10,031	877	836	66
아동음란 저작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	419	1,393	667	112
모욕	69,414	4,495	6,511	387
비방	14,911	462	1,563	41
명예훼손	9,358	295	724	14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5,205	200	829	42
협박	7,659	1,238	582	85
증거위조	1,810	20	357	1

4) 유튜브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사용자	144,836	42,025
기관	69,991	16,272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75,892	24,804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45,190	11,428
외설적 내용	27,308	7,338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22,813	4,673
폭력	21,349	3,964
개인정보	12,460	3,325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9,815	2,765

(3)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삭제 건수 비교

신고이유	네트워크 법집행법	커뮤니티 가이드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2,168	1,157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401	2,364

신고이유	네트워크 법집행법	커뮤니티 가이드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2,895	8,533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9,199	15,605
폭력	480	3,484
개인정보	926	3,747
외설적 내용	107	7,231

2. 2018년 하반기

1) 페이스북

(1) 신고자별 신고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사용자	408
기관	92
총 신고	500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38	12
위헌조직 표시 사용	59	22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음모	15	2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지시	15	3
간첩목적의 위조	20	1
공연한 범죄선동	64	19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은 교란	41	10
범죄 또는 테러단체 조직	19	2
국민선동	145	54
폭력물 반포	64	8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46	9
신앙 및 종교단체, 세계관에 대한 모욕	62	13
아동음란 저작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	24	3
모욕	261	80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비방	215	52
명예훼손	210	47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78	23
협박	49	15
증거위조	35	2

2) 구글+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사용자	2,770	1,461
기관	65	41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건수	삭제 건수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144	693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647	316
외설적 내용	331	160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136	42
폭력	66	39
개인정보	176	42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335	210

(3)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삭제 건수 비교

신고이유	네트워크 법집행법	커뮤니티 가이드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139	71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7	35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103	213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180	513
폭력	11	28
개인정보	1	41
외설적 내용	6	154

3) 트위터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사용자	236,322	22,004
기관	20,140	1,161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사용자		기관	
	신고 건수	삭제 건수	686	삭제 건수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5,443	686	925	42
위헌조직 표시 사용	5,141	2,053	362	35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음모	803	107	108	9
심각한 반국가적 폭력행위의 지시	660	115	73	11
간첩목적의 위조	898	11	100	0
공연한 범죄선동	12,531	2,811	561	98
범죄위험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3,236	497	437	37
범죄단체 조직	228	11	49	3
테러단체 조직	981	79	378	21
해외에서의 범죄 및 테러단체	920	165	398	37
국민선동	65,707	5,696	4,084	240
폭력물 반포	4,229	693	443	47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5,522	862	299	37
신앙 및 종교단체, 세계관에 대한 모욕	9,528	613	767	32
아동음란 저작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	2,913	533	756	70
모욕	74,279	4,366	6,238	292
비방	16,092	462	1,846	35
명예훼손	10,785	228	698	12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5,080	261	727	28
협박	10,304	1,747	704	75
증거위조	1,041	8	187	0

4) 유튜브

(1) 신고자별 신고 및 삭제 콘텐츠 건수

신고자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사용자	167,567	39,045
기관	83,390	15,599

(2) 신고이유 및 조치 현황

신고이유	신고 콘텐츠 건수	삭제 콘텐츠 건수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83,784	19,935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51,954	11,901
외설적 내용	36,226	9,129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27,924	3,056
폭력	25,034	3,721
개인정보	15,351	4,590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10,684	2,312

(3)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른 삭제 건수 비교

신고이유	네트워크 법집행법	커뮤니티 가이드
테러 또는 반헌법적 내용	1,388	924
유해하거나 위험한 내용	292	2,764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	3,206	8,695
혐오표현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	6,436	13,499
폭력	507	3,214
개인정보	1,027	3,563
외설적 내용	66	9,063

III. 투명성 보고 분석

1. 2018년 상반기 보고서 주요결과²⁾

1) 유튜브: 접수된 콘텐츠는 많으나, 비교수치가 없다

2) URL: <http://www.spiegel.de/netzwelt/web/netzdg-so-oft-sperren-facebook-youtube-und-twitter-a-1220371.html>



자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총 215,00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약 58,000건에 해당하는 27%만이 심사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대부분은 혐오표현이나 정치적 극단주의 내지는 인격권침해 또는 모욕으로 인정되었다. 해당 동영상 및 댓글은 독일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다.

유튜브는 항상 중복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고된 콘텐츠가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이는 당해 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커뮤니티 가이드에는 위반되지는 않으나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열거된 범죄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독일에서만 차단된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 법 시행 후 과거에 비해 유튜브에서 불법 콘텐츠가 덜 발견되어 폭력, 모욕 또는 선동위협이 줄어들었는지 여부가 이 수치로부터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집행법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과의 비교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용자 불만건수 중 적지 않은 건이 불법 콘텐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신고기능이 악용되고 있다거나 많은 수의 사용자가 어떤 것이 실제로 불법적인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튜브는 신고된 콘텐츠(kritischen Inhalte, 직역 시 비판적 콘텐츠)에 대해 대개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다. 즉 차단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콘텐츠의 약 93%에 대해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대응했다. 그 외의 결정들도 1주 이내에 마무리했다. 단지 859건의 사례에서만 결정까지 1주 이상이 걸렸을 뿐이다. 유튜브가 형법전문 외부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단 40건에 불과했다. 그 밖의 모든 콘텐츠의 위법 여부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몇몇의 법률가를 보유한, 자신

의 심사팀에서 명백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위법여부에 대한 결정이 특별한 어려운 경우에도 아직, 소위 자체 규제기관으로서 공인된 기관으로³⁾ 결정이 넘어가는 등의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산업의 경우 이미 자발적 자율규제기관(FSK)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이 있는 경우, 자신의 콘텐츠가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의해 차단된 사용자는, 불만을 말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튜브는 이제까지 특정 내용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완전히 삭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이러한 재심사 요청을 가능하도록 해왔다.

연방 법무부 장관 마스(Maas)의 명백한 목표는 사용자의 불만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 있었다. 그는 이 법이 위협 내지 다른 범죄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물론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도입 이전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3개의 미국 기업 중에 가장 선도적인 편이기는 했다.

2) 트위터: 가장 낮은 삭제 및 차단 비율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신고양식을 네트워크 법집행법 이후 기존의 신고시스템에 통합했다. 이는, 트위터의 절대적인 신고 수가 비교적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대략 264,000건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건은 29,000건보다 적어, 비율로는 1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단지 600건의 사례에서만 처리하는 데 24시간 이상이, 그리고 37건의 사례에서 24시간 이상이 걸렸다.

트위터 또한 신고된 콘텐츠가 트위터 지침이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내용은 완전히 삭제된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하지만 트위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독일에서 삭제된다.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 페이스북: “오버블로킹(과잉차단)” 은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위반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혀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 사용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특별한 네트워크 법집행법 신고기능으로 인하여 페이스북은 2018년 상반기에 1,794건의 네트워크 법집행법 위반 콘텐츠를 접수했을 뿐이며, 따라서 이는 유튜브 및 트위터의 작업량에 미치지 못한다. 약 65명의 심사관이 페이스북에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법집행법 양식을 통해 신고된 콘텐츠의 경우에도, 먼



³⁾ Eine anerkannte Einrichtung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경우, 콘텐츠는 전세계적으로 삭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법집행법 기준에서 내용의 불법 여부가 심사되고, 위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독일에서 차단된다.

두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얼마나 더 자주 발생하는지는 페이스북의 보고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1,704건의 내용 중 362건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고 보고되었을 뿐이다. 대부분 모욕, 혐오표현 또는 비방에 해당한다. 즉, 불쾌한 콘텐츠의 약 80퍼센트가 페이스북의 관점에 따라서는 위법하지 않으며 또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낮은 숫자를 고려할 때 “오버블로킹”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적은 페이스북 사용자들만이 이 옵션을 인식하거나 찾고 이해하며,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따른 신고시스템의 대안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유튜브와는 두 가지 유사점이 있다. 페이스북은 결정은 대부분 거의 일주일 이내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24시간 이내에 완료되었다. 20여 건의 사례만이 결정이 내려지는 데 7일 이상이 걸렸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자신의 콘텐츠가 부당하게 차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2. 2018년 하반기 보고서 주요 결과⁴⁾

1) 페이스북에서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2018년 하반기 페이스북은 상반기보다 확실히 적은 수의 콘텐츠가 신고되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 사이의 기간에 사용자들은 1,048개의 콘텐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거의 40퍼센트가 감소된 수치이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증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들을 고려할 때 놀랄 만큼 낮은 수치이다. 트위터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적은 콘텐츠가 신고되었다.

페이스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반기의 신고 숫자가 적은 것은 네트워크 법집행법 신고 양식이 메뉴설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법집행법 이전에도 사용자가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즉 게시물 바로 옆에 있는 신고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페이스북의 사이트 규정 위반, 소위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 어쨌든 페이스북은 모든 게시된 콘텐츠가 우선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는 현재 심사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4) URL: <http://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netzdg-neue-zahlen-von-facebook-youtube-twitter-a-1250875.html>

2)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콘텐츠 차단 시 경우 정치범죄가 항상 주된 적용 영역만은 아니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테러단체 조직 내지는 위헌조직의 표시 사용과 같은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주요영역은 모욕과 비방 및 명예훼손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경우, 동 범죄로 인해 2018년 7월에서 12월까지 총179개의 게시물이 차단되었으나, 선동으로 인한 차단 게시글은 54개에 불과했다.

유튜브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이 중심역할을 담당한다. 유튜브는 같은 기간, 증오표현이나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한 19,935건의 게시물을 차단했고 인격권침해나 모욕을 근거로 한 11,901건의 게시물을 차단했다. 이 수치는 페이스북, 유튜브 및 트위터에 의해 발표된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미 드러난 경향을 재확인해준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안은 언뜻 보기에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는 법률이 의무화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 콘텐츠 처리 기한인 24시간 이내에 작동한다. 이러한 엄격한 지침이 실제 법률적으로 항상 최고의 결정을 유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3) 사용자가 불법이라고 신고한 모든 콘텐츠가 실제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고된 콘텐츠의 1/4만을 삭제했을 뿐이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상반기 21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비율이 다소 올랐다. 기업에 따르면, 명백한 근거 없이 콘텐츠를 신고하는 경우는 오히려 간단하다고 한다. 처음 몇 달 동안 사용자들은 아마도 신고절차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

3. 실제 경고조치를 받은 표현물 사례 등

1) 정당 행사의 공개연설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으며, 구글은 해당 동영상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독일에서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였다.

2) 제2차세계대전을 언급하고 스와스티카(卍) 표시를 보여주는 스폰지밥 영상의 일부가 나오는 동영상이 나치 선전을 이유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파시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나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에 달린 다양한 댓글이 소녀와 성인여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 구글은 해당 댓글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독일에서 해당 댓글을 차단했다.

4) 히틀러의 연설 녹화영상이 증오심 표현을 이유로 신고되었다. 동영상은 역사기록 전용채널에 업로드되었으며, 동영상의 제목과 설명은 역사적 맥락에 따른 것이었다. 구글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나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 구글은 특정 인물을 아동학대자 및 소아성애자라고 지칭하는 동영상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다. 동영상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구글은 독일에서 해당 동영상을 차단했다.

IV.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대한 평가

1. 독일 내 반응

이 법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비방과 거짓뉴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 법은 비인도적인 표현들이 게시되는 것을 얼마큼 막을 것인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감독기구인 FSM⁵⁾에서 정기적으로 신고절차를 심사하는 마틴 드렉슬러(Martin Drechsler)는, 물론 SNS에서의 처벌 가능한 비방 등이 여전히 발견되나 매우 극단적인 표현 등은 주관적인 인상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SNS에서의 극우주의를 관찰하는 아마데우 안토니오 재단(Amadeu Antonio Stiftung)의 미로 디트리히(Miro Dittrich)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이 우익 사용자들 사이에서 내용이 아니라 언어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극우주의자들은 자신의 게시글을 기업이 삭제하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두고 있을 뿐으로, 표현의 본질은 결국 대체로 동일하다고 한다.

지난 1월, 기자인 리차드 굿야(Richard Gutjahr)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음모 이론가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공격받고 위협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발표했다.⁶⁾ 그는 특히 유튜브의 회피와 주저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처음 그는 동법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으로, 커뮤니티 가이드가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이전에는 대개 그대로 남아있었던 혐오 콘텐츠들이 삭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동법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독일에 우편주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한계

동법이 가지는 한계 중 하나는 모든 중요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

5) URL: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e.V.)

6) URL: <https://www.gutjahr.biz/2018/01/hatespeech/>



라는 것이다. 즉 선동적인 콘텐츠와 명백하게 처벌가능한 게시물이 게시되는 주요 네트워크 중 일부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공개채널을 통하여 채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의 트롤 프로젝트인 레콩키스타 게르마니카(Reconquista Germanica)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8월 말 쾨니츠(CheMNitz)에서 극우적인 폭동이 발생하였을 때, 선동적 메시지와 거짓보도들이 특히 채팅앱 텔레그램(Telegram) 공개채널을 통해 배포되었다. 또한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브콘탁테(VKontakte)는 권리의 퇴각장소로 여겨지며, 그 곳에서의 선동은 좀처럼 삭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플랫폼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메신저로 분류되며, 또한 200만 명 미만의 독일 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Instagram) 또한 자신의 삭제사례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간단한데, 100명 미만의 사용자가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라 콘텐츠를 신고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해당 플랫폼이 동법에 따라 보고서를 게시하여야 하는 임계점에 놓여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틱톡(TikTok) 또한 아직까지 보고서를 게시하지 않았다.

⁷⁾ 이 법에 따르면 SNS 제공자는 당해 연도에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100개 이상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이의제기의 취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

모든 숫자를 공개해야 하는 자를, 연방 법무부에 소속된 사람들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동법은 행정청이, 어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V. 소결

네트워크 법집행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동법은 대체로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동법은 대규모 네트워크 사업자가 수천 개의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했다. 물론 이는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위법기준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여전히 어렵고 공감되지 않는다.

동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관청에 의해 심사되고 있으나, 동 기관은 동법이 소규모 네트워크에도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연방법무부는 동법이 시행 후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의 투명성 보고가 즉시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신속한 개정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늦어도 2020년에는 규제에 대한 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때까지 발표되는 보고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발전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FSM는 2018년 12월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평가하는 외부 평가기관으로서의 인증을 신청했다. 통제된 자율규제의 맥락에서 플랫폼들은 불명확한 사례들을 외부 평가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 FSM이 연방 법무부에 의해 승인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